

대학원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외국의 자매대학에서 수학을 하고자 하는 교환학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자매결연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학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이 2년 6월 이상 되는 과 정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2학기 이상 이수학기가 남은 자
2. 전체 학업성적이 3.5이상인 자
3. 토플(TOEFL)성적이 550점 이상이거나 자매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 이상인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사실이 없는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해당기간의 등록금을 본 대학교에 납부한 자

제4조 (신청시기) 외국의 자매결연대학에 교환학생을 보내기 위하여 매년 4월 중 소정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환학생 선발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TOEFL 성적표 사본(원본은 확인 후 반려함) 1부
5. 신앙고백서 1부
6. 담임교역자 추천서 1부

제6조 (선발절차 및 인원) ① 교환학생 추천은 공개경쟁 원칙을 토대로 하여 대학원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때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선발된 자의 자격은 1년으로 한다.

③ 동일대학에 다수가 지원할 경우 장학생은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생이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는 영어권은 토플성적 우수자로, 비 영어권은 전학기 성적과 토플성적을 합산하여 우수한 자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대학원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

제7조 (등록)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등록은 협정내용에 따라 시행하고 일방으로 자매결연대학에 갈 경우에도 본 대학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교환학생의 장학금) 자매결연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이 일방으로 선발될 경우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과과정 이수) 교환학생이 외국의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동일 전공분야의 전공과목과 관련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출국 전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간동안 휴학을 할 수 없다.

제11조 (출국허가) 교환학생의 출국허가는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원장의 제청으로 이를 총장이 허가한다.

제12조 (이수증) 교환학생은 이수기간이 끝나면 교환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이수증과 성적증명을 반드시 귀국 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취득학점의 인정) ① 교학과에서는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해당 전공주임교수에게 의뢰하여 확인을 받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②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③ 성적의 처리는 교환학생 인정학점으로 하여 총 인정학점을 표기하고, 최저이수요구학점에 포함한다.

④ 교환기간의 개설과목 중 대체할 수 없는 필수과목은 추가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14조 (교환학생지도) 교환학생의 지도는 교환대학과 협의하여 본 대학원의 학칙 또는 자매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 또는 학사내규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